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1.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신설(석사과정) -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해외 현지 한국어 교사와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 전문화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급 외국인 교육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2.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과정 신설(석사과정) - 감염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별표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개정(안)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 (신설) 한국어교육학과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 → (신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 제39조(학위수여) [별표2] 학위종별 개정(안) -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 → (신설) 문학석사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석사학위과정 → (신설) 간호학석사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입안예고 공청회: 2023.11.9.(목), 오전 10:00 -전자공청회: 2023.11.7.(화) ~ 11.9.(목)		
	다. 의견제출 유무	반영예정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예정		
첨부자료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삭제 (2006.8.4.)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00.00.) ②(현행과 같음)
제39조(학위수여)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한 자와 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변경 2003.4.30., 2003.6.4) (개정 2006.11.6., 2014.11.27., 2017.3.31., 2018.4.6.)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8.30.) ③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31.) (개정 2018.4.6.) ④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①(현행과 같음)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8.30., 2023.00.00.)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u>부칙</u> <u>이 학칙은 2023년 월일부터 시행한다.</u>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계열	석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계열	석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교육학과	70명	인문 사회	교육학과	70명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			-	
	-			-	
	-			-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신설)			한국어교육학과	
자연 과학	약학과		자연 과학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신설)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직업재활학과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공학	물리치료학과		공학	물리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의학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의학	수소모빌리티공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과	
계	31개 학과	70명	계	33개 학과	70명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학 위 종 별				학 위 종 별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석 사	박 사
인문 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인문 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학석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학석사	문 학 박 사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박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석사	소방방재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석사	소방방재학박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 석사	스포츠복지교육학 박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 석사	스포츠복지교육학 박사
	국제교육문화학과	-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국제교육문화학과	-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 석사	문학박사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 석사	문학박사
	(신설)				한국어교육학과	문 학 석 사	-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명과학과	이 학 석 사	-		생명과학과	이 학 석 사	-
	식품생명공학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식품생명공학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신설)				간 호 학 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간 호 학 석 사	-
	직업재활학과	재 활 학 석 사	-		직업재활학과	재 활 학 석 사	-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공학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공학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전기전자공학과	공 학 석 사	-		전기전자공학과	공 학 석 사	-
	에너지전기공학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에너지전기공학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동아시아조경학과	공학석사	-		동아시아조경학과	공학석사	-
	컴퓨터공학과	공 학 석 사	-		컴퓨터공학과	공 학 석 사	-
	건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조경건설공학과	-	공학박사		조경건설공학과	-	공학박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제약공학과	공학석사	-		제약공학과	공학석사	-
	제약화장품공학과	-	공학박사		제약화장품공학과	-	공학박사
	제난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제난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예체능	국 악 과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예체능	국 악 과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석사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석사	
	태권도학과	체육학 (태권도전공)석사	체육학박사		태권도학과	체육학 (태권도전공)석사	체육학박사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규 정 입 안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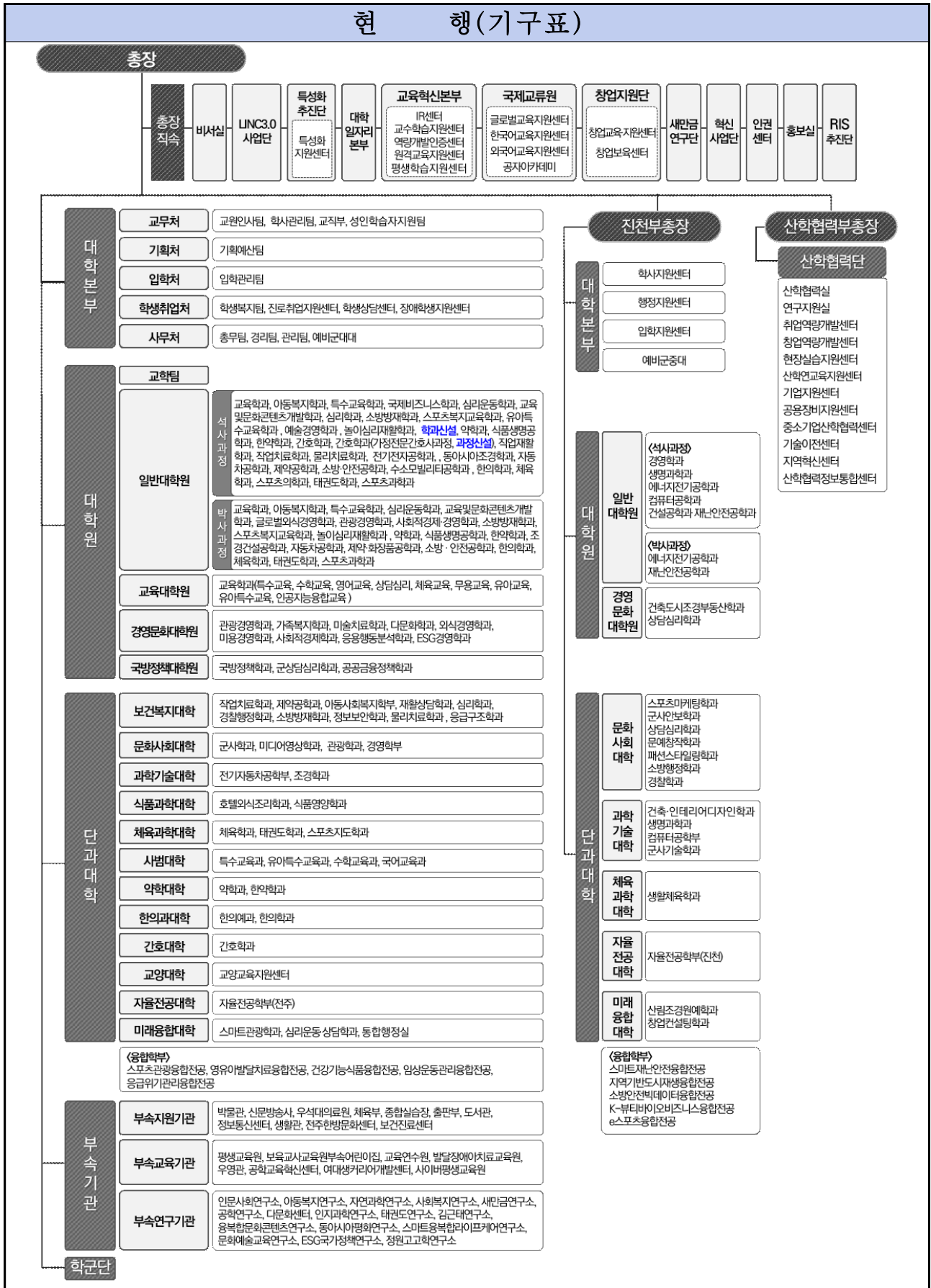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 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1.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신설(석사과정) -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해외 현지 한국어 교사와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 전문화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급 외국인 교육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2.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과정 신설(석사과정) - 감염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6조(기구표) [별표]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 (신설) 한국어교육학과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 → (신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입안예고 공청회: 2023.11.9.(목), 오전 10:00 -전자공청회: 2023.11.7.(화) ~ 11.9.(목)	
	다. 의견제출 유무	반영예정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반영예정	
첨부자료	• 직제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직제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3.6.8., 2023.7.27., 2023.10.26.)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00.00.)
(신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3. . .))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기구표)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안)(기구표)

